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및 인증기준 제정 · 고시

국내 · 외 제품의 환경성 관련 정책동향 및 규격 반영
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제무역규제 적극 대응

■ 환경부는 1월 6일 환경표지(환경마크) 대상제품군을 7개 용도 · 기능으로 **분류체계를 재정비**하고, **6개 제품을 대상제품에 추가**하였으며, 국 · 내외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**23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대폭 손질**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인증기준의 개정은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확대에 따라 제품군 분류체계를 확립하고, **제품의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**하여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때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.

■ 이번에 **새로이 인증기준이 마련**된 제품은 그 동안 대상품목으로 제안된 물품 중 환경성 개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**휴대전화기, 포장재, 생분해성 수지제품, 수처리제, 신발, 저소음 건설장비 등 6개 품목**이다.

○ 이로써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1년전 79개 제품군에서 84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, 1월 현재 227개 업체에서 441개 제품을 인증받아 1년전 181개 업체 326개 제품에 비해 35%가 증가되었다.

※ 작년 6월 3개 품목, 이번 6개품목 등 총 9개품목이 증가하여 88품목이 되었으나, 분류체계 정비시 품목통합으로 4개품목이 감소되어 84품목이 됨

■ 이번 **인증기준 개정의 가장 큰 특징**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**우리나라의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에 관련사항을 대폭 반영**하였으며, 이 외에 국제규격, 공공기관 녹색구매사업,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등 국내 · 외 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한 것이다.

○ PC, TV, 프린터, 복사기, 팩시밀리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,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품 및 물질 안전성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, EU의 유해물질관련 지침(RoHS)이나 폐가전처리지침(WEEE)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기준을 강화하였다.

※ RoHS(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/**전기 · 전자제품내 유해 화학물질 제한지침**) : 2006.7.1부터 납,수은,6가크롬,PBB,PBDE가 포함된 전기,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금지

※WEEE(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/ **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**) : 가전제품 별로 재생,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설정(50~80%)하여 2007년부터 준수토록함

○ 페인트, 의류, 가구 등 가정용품의 경우 인체유해물질 등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고,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대폭 반영하였다.

○ 가스보일러, 사무용 기기 등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의 경우, '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'이나 '에너지효율관리제도'에서 정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, 건축자재류는 환경부 ·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였다.

■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일본, 중국, EU 등 **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에 도움**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**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환경부는 앞으로도 **친환경 건축자재**, 교통 · 여가 · 문화 관련제품 등 **대상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가는 한편,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촉진,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**지원시책을 적극 추진**해 나갈 계획이다.

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주요 개정내용

1. 근거법령

○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

2. 주요 개정내용

■ **대상제품 분류 체계 및 명칭변경**

○ 제정 순서에 따라 분류해 왔던 것을 7개 용도 · 기능별로 재분류

현 행 (82개제품)		개정(안)(7개 분야 · 84개 제품)
1. 인쇄용지	···▸	1. 사무용 기기 · 가구 및 사무용품 (12제품)
2. 사무용지	···▸	2. 주택 · 건설용 자재 · 재료 및 설비 (18제품)
3. 화장지	···▸	3.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(11제품)
	···▸	4. 가정용 기기 · 가구 (10제품)
	···▸	5. 교통 · 여가, 문화 관련 제품 (11제품)
81. 가방	···▸	6. 산업용 제품 및 장비 (10제품)
82. 태양전지및자가발전장치	···▸	7. 복합용도 및 기타 (12제품)

○ 대상제품 통합 및 명칭 변경

– 대상제품 통합(8개→4개)

현행 대상 제품명		개 정(안)
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용 모니터	···▸	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
사무용 목제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목제 책장 및 벽장	···▸	사무용 목제 가구
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	···▸	페인트
해상용 2사이클 엔진오일 오토바이용 2사이클 엔진오일	···▸	2사이클 엔진오일

–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(3개) : 프린터, 팩시밀리, 인쇄물

■ **대상제품 추가선정 및 인증기준 제정 (6개제품군)**

○ **신발, 휴대전화기, 포장재, 수처리제, 저소음 건설장비, 생분해성 수지 제품 등 추가선정 및 인증기준 제정**

※ **대상제품이 82개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확대**(6개 제품 추가, 명칭 통합으로 4개 제품 감소), '02.12월현재 217개업체 441개제품 인증

■ **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 (23개 제품군)**

○ 사무용 기기 · 가구 및 사무용품(10) : 토너카트리지, 복사기, 레이저 프린터, 레이저 팩시밀

리, 개인용 컴퓨터, 컴퓨터용 모니터, 노트북 컴퓨터, 전기냉온수기, 사무용 목제 책상 및 테이블, 사무용 목제 책장 및 벽장

○ 주택 · 건설용 자재 · 재료 및 설비(5) :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, 자동온도조절 밸브, 수성페인트, 유성페인트, 가스보일러

○ 가정용 기기 · 가구(2) : 세탁기, 텔레비전

○ 교통 · 여가, 문화 관련 제품(5) :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, 해상용 2사이클 엔진오일, 오토바이용 2사이클 엔진오일, 자동차용 부동액, 연속간행물

○ 복합용도 및 기타(1) : 태양열 온수기

※ 인증기준 개정시 공통적인 고려사항

○ 국제표준화 및 상호인증 대비
- RoHs(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위험 물질 사용 제한지침), WEEE(폐전기/전자제품에관한 지침) 등 해외 규제사항 반영 : 유해물질, 폐기물 관련 Eco-Design
- 소음 기준 : 음압기준 외 음향파워레벨 기준 준용

○ 타 인증제도 연계 반영 :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기준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제도

3. 향후 추진계획

■ 국제표준화 및 상호인정 관련 후속 검토 추진

○ 페인트, 토너카트리지 : GEN 중심의 공통기준안 반영 추진

○ 복사기 : 북유럽 ·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 추진

■ 대상제품의 지속적 확대 및 인증기준 제정

○ 선정제안된 상수용 복합관, 토양 개량제, 저전압 전선 케이블, 수화응고형 방수재, 이중바닥재 등

■ 친환경 건축자재의 신규 인증기준 제정

○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연계를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류 제정
- 보행재(장판), 카페트, 강화목 바닥재, 데코타일, 유리창 및 창틀, 실내 마감재, 빌트인 가구, 소음 진동 방진재 등

<참고1> 대상제품 인증기준 관리번호 변경내역

대 분 류	중 분 류	대상제품 (EL 분류번호별)
사 무 용 기기 · 가구 및 사무용품 (100)	문구 (101~140)	101. 인쇄용지, 102. 사무용지, 103. 종이점착테이프 및 종이점착 시트, 104. 토너카트리지
	사무기기 (141~170)	141. 복사기, 142. 프린터, 143. 팩시밀리, 144.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, 145. 노트북 컴퓨터
	사무가구 등 (171~199)	171. 전기 냉온수기, 172. 사무용 목제 가구, 173. 가스 캐비넷 히터
주택 · 건설용 자재 · 재료 및 설비 (200)	전기 (201~220)	201. 형광램프, 202. 형광램프용 안정기, 203. 안정기 내장형 램프, 204. 감지형 등기구, 205. 나트륨램프용 안정기, 206. 메탈헬라이드램프용 안정기, 207. 전선케이블
	수도 · 배관 자재 (221~240)	221. 절수형 수도꼭지, 222.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, 223. 절수형 양변기, 224. 양변기용 부속, 225. 수도 계량기, 226. 자동 온도조절 밸브
	기타 자재 (241~260)	101. 인쇄용지, 102. 사무용지, 103. 종이점착테이프 및 종이점착 시트, 104. 토너카트리지
	설비 등 (261~299)	261. 가스 보일러
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(300)	세제류 (301~310)	301. 비누, 302. 세탁용 세제, 303. 주방용 세제, 304. 식기세척기용 세제, 305.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및 다목적 세정제
	섬유 · 가죽류 (311~320)	311. 의류, 312. 가방, 313. 신발
	기타 잡화 (321~349)	321. 화장지, 322. 스프레이 제품, 323. 모조 귀금속
가정용 기기 · 가구 (400)	전기기기 (401~430)	401. 에어컨디셔너, 402. 세탁기, 403. 식기세척기, 404. 냉장고, 405. 김치냉장고, 406. 전기진공청소기
	전자기기 (431~480)	311. 의류, 312. 가방, 313. 신발
	가구 등 (481~499)	481. 부엌용 목제 식탁
교통, 여가, 문화 관련 제품 (500)	자동차 (501~550)	501. 승용차용 타이어, 502. 트럭 · 버스용 타이어, 503.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, 504.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, 505. 2사이클 엔진오일, 506. 자동차용 부동액, 507. 비석면 운송부품, 508. 공기청정기용 여과재
	여가 · 문화 (551~599)	551. 낚시 추, 552. 낚시 미끼, 553. 인쇄물

대 분 류	중 분 류	대상제품 (EL 분류번호별)
산업용 제품, 장비 (600)	원료 · 자재 (601~651)	601. 유압 작동유, 602. 인쇄용 잉크, 603. 산업용 축전지, 604. 수산양식용 부자, 605. 산업용 세정제, 606.포장재, 607. 수처리제
	조립제품, 장비 (651~699)	651. 냉동 · 냉장 쇼케이스, 652. 냉 · 온 음료 자동판매기, 653. 저소음 건설기계
복합용도 및 기타 (700)	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 (701~719)	701. 유류, 702. 태양열 온수기, 703.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장치 사용 제품
	플라스틱 · 고무 · 목재 제품 (721~739)	721. 합성수지 제품, 722. 고무제품, 723. 목재 성형제품, 724. 생분해성 수지 제품
	금속 · 무기재료 · 요업제품 (741~759)	741. 단련용 황동합금, 742. 주물용 황동합금, 743. 무기성 토목 · 건축자재, 744. 슬래그 가공제품
	기타 (761~799)	761. 재보충용 부품

<참고2> 신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주요 내용

1. 신발

- 25g 이상의 부품으로서 염화비닐수지(PVC)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금지 기준 설정

- 직물(인조피혁 포함) 및 피혁의 포름알데히드, 염소화 페놀류, 유기주석화합물, 아조염료 등 유해성분 기준 설정

- 제품 중 납(Pb), 카드뮴(Cd), 6가크롬(Cr), 비소(As) 함량기준 설정
  - 10mg/kg 이하

- 개별포장의 재활용성에 대한 기준 설정
  -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라미네이팅, 수지코팅 종이, 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 금지

- 해당 한국산업규격 및 동등 수준이상의 우선구매대상 단체규격 품질기준 설정

2. 핸드폰

- 사용과정에서 인체 안전성 기준 설정
  -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흡수율(SAR) : 0.8W/kg 이하
  - 버튼, 케이스 등 제품의 표면과 2차전지 팩에 알러지 유발물질 사용금지

-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 설정
  - 10g 이상 합성수지 부품에 할로겐계 합성수지 및 브롬계 난연제 등사용 금지
  - 2차 전지팩 내의 납, 카드뮴 중 금속 사용 금지

- 폐기단계에서 고형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재활용성 기준 설정

3. 포장재

- 종이 · 판지 · 펄프 포장재에 대한 기준 설정
  - 재활용 용이성 기준 : 라미네이팅, 수지코팅 등 재료 사용 금지

• 포장재 용도별 고지함량 기준
• 이종재질의 사용제한 기준
• 접합부 사용 기준

–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기준 설정
• 폐재 사용률 기준
• 제품 재활용성 기준
• 25g 이상부품의 재질표시 및 염화비닐수지 사용금지 기준
• 난연제, 안정제, 발포제 등 제품 화학물질 사용 제한 기준

– 환경친화적 설계 고려 기준 요구

4. 수처리제

–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관련 안전성 기준 설정
• 납, 수은, 바륨, 비소 등 유해성 분별 기준

–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관련 안전성 기준 설정
• 페놀류, 트리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디클로로에탄 등 유해성분별 기준

– 소독제 관련 기준 설정

– 심미적 영향물질 관련 기준 설정

5. 저소음 건설기계

– 건설기계별, 엔진출력범위별 소음발생(음압 레벨 또는 음향파워레벨) 기준 설정

※ 해외 시행국가에서는 음향파워레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동 항목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시험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잠정간 해외 기준 준용

→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검토 예정

6. 생분해성 수지제품

– 제품의 생분해성 기준설정
• 수지 외 구성재료 사용제한 기준
• 생분해성 80% 이상(45일 시험 후 표준물질 대비 최종 생분해도 값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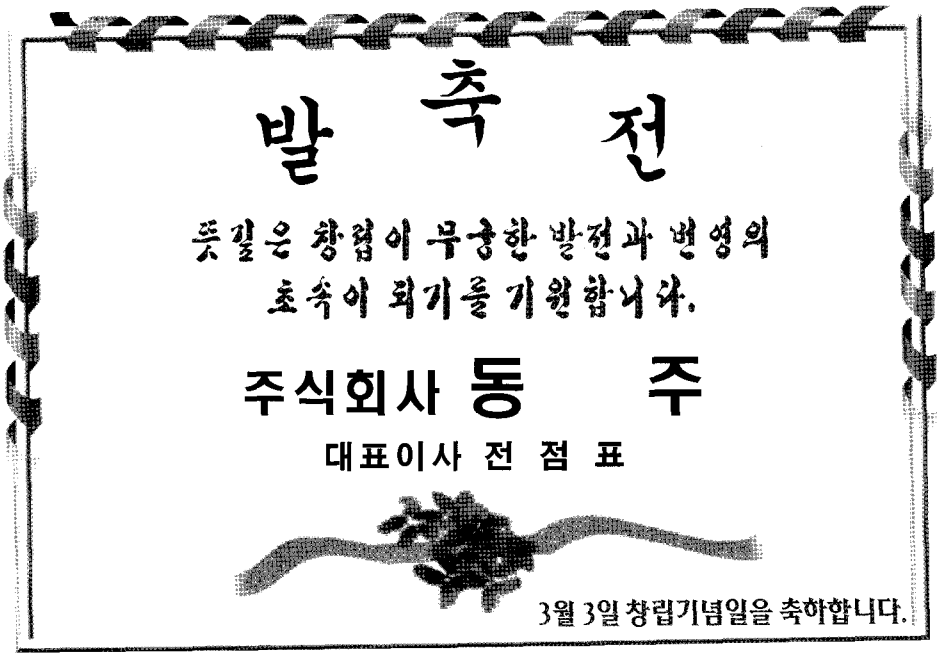
– 제품 유해물질 관련 기준 설정
• 납,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
• EU 유해물질 관련 지침(R 표시기준 등)에 따른 화합물 사용금지 기준